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 · 판매하려면 포장재 겉면에 의무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자연상태 식품 의무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 표시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내용량
4.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5. 산지(원산지표시법)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산지(원산지표시법)

* 투명포장(진공포장 제외)은 내용량 생략 가능
** 투명포장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하지 않은것은 날짜 표시 생략 가능

일반농산물 문의사항 :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 **1588-8112**

예시 일반농산물 의무표시 방법

* 표시방법은 포장재 인쇄, 스티커 또는 스탬프도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 포장

표시사항			
품목	사과	생산자	사과작목반 홍길동 (054-***-****)
산지	국내산		
날짜 표시		내용량	5㎏(13개)

투명 포장

품목	사과
생산자	사과작목반 (홍길동)
산지	국내산

* 날짜 표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
* 투명 포장의 날짜 표시는 냉동·건조·염장 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유통·판매하려면 포장재 겉면에 의무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의무표시

* "표준규격품" 문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것은 농업인 자율임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란 표준규격(등급규격, 포장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표준 규격품 → 의무표시

1. "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4. 품종 5. 등급 6. 내용량 또는 개수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8. 식품안전문구(세척 또는 가열)

표준규격품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지원·사무소**

예시 표준규격품 의무표시 방법

* 표시방법은 포장재 인쇄, 스티커 또는 스탬프도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규격품			
품목	사과	생산자 (연락처)	사과작목반 홍길동 (054-***-****)
품종	부사		
등급	(특)상, 보통	내용량 (개수)	5㎏(13개)
산지	국내산		
* 세척 후 드세요			

변경

표준규격품			
품목	사과	생산자 (연락처)	사과작목반 홍길동 (054-***-****)
품종	부사		
등급	(특)상, 보통	내용량 (개수)	5㎏(13개)
산지	국내산		
* 세척 후 드세요		날짜 표시	

* 날짜 표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중 선택하여 표시(식약처 기준)
* 표준규격품은 불투명·투명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8가지 의무표시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날짜 표시는 식약처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표시 가능